

◎ 2022-1학기 유고결석 변경사항 안내

변경 전			변경 후			비고
3.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			3.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			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상자는 “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”으로 선택해야하며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사용은 유고결석 인정 불가
인정사유	인정기간	증빙서류	인정사유	인정기간	증빙서류	
확진자(PCR검사 양성)	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기간 내	확진판정 문자메세지	확진자(PCR검사 양성)	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기간 내	확진판정 문자메세지	
PCR검사 시행자	당일부터 2일	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	PCR검사 시행자	당일부터 2일	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	
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한 자가진단 키트 사용자	당일	1.진료확인서 2.진료비 영수증, 처방전, 약국 영수증 중 택1	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	당일	1.진료확인서 2.진료비 영수증, 처방전, 약국 영수증 중 택1	
백신접종자	당일부터 2일	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(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)	백신접종자	당일부터 2일	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(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)	
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	당일부터 14일	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	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	당일부터 14일	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	
<p>※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,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</p> <p>※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당일 PCR검사 권장</p> <p>※ 신속항원검사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확인서도 유고결석 증빙자료로 신청 가능</p> <p>※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</p>			<p>※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,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</p> <p>※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당일 PCR검사 권장</p> <p>※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</p>			“3.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” 하단의 안내사항 중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안내 삭제